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

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6. 4. 2009고합1462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박순배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영로 외 4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